

의안번호	2218894
의 퇴 인	이해민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4.
추계번호	26F255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말에서 202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11.4억원(연평균 3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2조)	-3.8	-3.8	-3.8	-11.4	-3.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 (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중소·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- 대상: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*을 이전 및 대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 ※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 또는 기술 - 특례내용: 이전소득의 50%, 대여소득의 25%를 세액감면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 (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는 2028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
-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
 - 향후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은 최근 3년(2023~2025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－ 동 제도는 2021년 세법개정으로 특례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이후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중소·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특례로, 최근 특례대상을 확대되는 등의 제도변화 존재
 - 동 제도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 발생하는 이전소득의 50%, 대여소득의 25%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감면특례를 제공
 - ※ 특허권 등: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비법 또는 기술
 - 동 제도는 2021년 세법개정으로 특례대상의 기업규모를 중소·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변화 존재
 - － 특례대상의 기업규모 요건: (2021년 이전) 중소기업 → (2022년 이후) 중소·중견기업
- (특례실적) 최근 3년(2023~2025년)간 동 제도에 따른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현행 특례대상의 기업규모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 2023년 이후 특례실적을

살펴보면, 연평균 3.8억원 수준

－ 세목별로 살펴보면, 특례실적의 대부분은 법인세에서 발생

[표 2]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(잠정)	연평균('23~'25년)
특례실적	5.7	3.7	2.01	3.8
－ 법인세	5	3	2	3.3
－ 소득세	0.7	0.7	0.01	0.5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3년간 특례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3년(2023~2025년)간 연평균 특례실적: 3.8억원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: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8	2029	2030
세수 감소효과	3.8	3.8	3.8

(3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말에서 2029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총 11.4억원(연평균 3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8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2조)	-3.8	-3.8	-3.8	-11.4	-3.8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